



보도참고자료

2020. 12. 2.(수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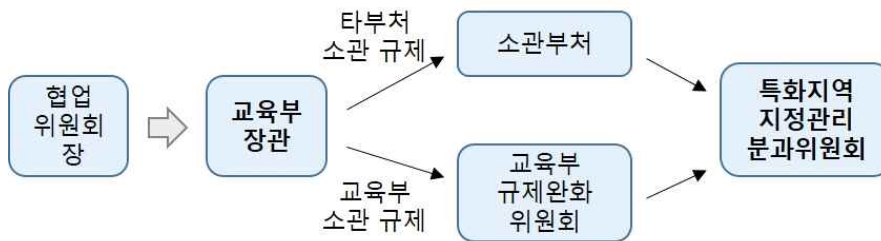
- ◆ 지자체-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·지원근거 마련
- ◆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 유예 제도 적용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이 제382회 국회(정기회)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‘지역협업체계’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와 규제특례가 가능한 ‘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(이하 ‘특화지역’이라 한다)’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(지역협업체계 지원 근거 마련)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(플랫폼)*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. (법 제21조 신설)
 - *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(2020년 1,080억 원 → 2021년 1,710억 원)
 -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과 함께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.
- (규제특례 적용 근거 마련) 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규제 유예(샌드박스) 제도*를 도입하여 최대 6년(4+2)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특례(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)를 적용한다. (법 제8조의2, 제22조~제24조 신설)
 - * (개념) 기존 규제 불구,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

일정조건 하(시간·장소·규모)에서 규제를 면제·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

- 특화지역 지정 시, 사전에 규제 완화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된다.
-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규제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및 특화지역 분과위원회*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.

* (구성) 위원장: 교육부장관 / 위원: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, 민간 전문가 등



- 교육부는 지역혁신 협업체계(플랫폼)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,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에 시범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, 향후 고등교육 규제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2. 주요 규제특례 사례

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”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</u></p>
<p>제8조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·변경·지정해제 및 특화지역 계획의 확정·변경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8조의2(<u>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</u>) ① 제8조제7호에 따른 <u>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·변경·지정해제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<신 설></p>	<p><u>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·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(이하 “특화지역 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</u></p> <p><u>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.</u></p> <p><u>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</u></p> <p><u>제21조(대학과 지역의 협업) ①</u></p> <p>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② <u>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, 고등교육기관,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(이하 “지역협업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지역협업위원회의 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, 제3항 및 제4항에 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(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)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(이하 “특화지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(이하 “특화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</u> <u>2.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</u> <u>3.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</u>

현 행	개 정 안
	<p>4. <u>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</u></p> <p>5. <u>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③ <u>지역협업위원회의 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항과 제6항에서 같다)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3조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)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.</p> <p>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협업체계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24조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·지정해제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(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으로 신청하여야 한다)에 따라 <u>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</u></p> <p>2. <u>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u></p> <p>④ <u>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(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⑥ 제3항에 따라 <u>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. 다만,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<u>그 밖에 특화지역계획·특화지역의 변경·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
붙임 2

주요 규제특례 사례

※ 아래 표는 특례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며, 구체적인 규제특례 대상과 정도는 지역의 신청에 따라 달리 정해짐

규제혁신 필요성	관련 법령	규제특례(안)
<p>○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</p> <p>- 지역 기업, 연구소, 공공 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이 스스로 길러내기 위해 정원 조정 등 학사구조 개편 필요</p>	<p>고등교육법 제4조(학교의 설립 등)</p> <p>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2조의3 (학과정원 등의 증설·증원 기준)</p>	<p>(현행)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시 4대 요건 준수 → (개선)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 적용 완화</p>
<p>○ 이동수업 기준 완화</p> <p>- 공동교육과정 또는 공유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밖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 필요</p>	<p>고등교육법 제22조(수업 등)</p> <p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(수업 등)</p> <p>이동수업 운영기준</p>	<p>(현행) 이동수업 대상, 시설·설비 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 → (개선) 다수의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, 지자체가 지정한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</p>
<p>○ 계약학과 설치</p> <p>-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,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 유도</p>	<p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(입학전형의 구분)</p> <p>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·운영)</p>	<p>(현행) 계약학과 모집 단위를 기업으로 봄에 따라 계약학과 지원 시 1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→ (개선) 다수의 대학, 다수의 기업 간 계약학과 설치 가능하도록 해당 기준 적용 완화</p>
<p>○ 공유대학 운영</p> <p>- 지역 국립대, 사립대, 국립대 등 복수의 대학이 연합하여 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인재 공동 양성</p>	<p>고등교육법 제4조(학교의 설립 등)</p> <p>고등교육법 제19조(학교의 조직)</p>	<p>(현행) 복수의 대학이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체제에 관한 법규 미비 → (개선) 공유대학이 발급하는 학위 인정</p>
<p>○ 기타 규제혁신</p> <p>- 교육혁신에 필요한 규제 혁신 사항을 지역에서 신청하면 심의</p>	<p>법령, 지침, 사업계획 등에 있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</p>	<p>(개선)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대학 혁신 지원 및 제도개선 병행</p>